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396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등]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류성용

피 고 1. F

2. G

3.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훈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준태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1/21지분, 원고 B에게 1/21지분, 원고 C에게 3/147지분, 원고 D에게 2/147지분, 원고 E에게 2/147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1/42지분, 원고 B에게 1/42지분, 원고 C에게 3/294지분, 원고 D에게 2/294지분, 원고 E에게 2/294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I의 딸들이고, 원고 C, D, E는 위 I의 장남인 망 J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나. 망 K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2007. 6. 19.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위 K이 2017. 7. 8.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 합의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 B, A은 망 K의 사망 이후 피고들이 망 K의 채무를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합의하면서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나 문제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들이 망 K에게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거나, 위 등기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까지 부제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망 I은 91세의 나이로 중증 치매증상이 있어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망 K이 망 I의 인장을 무단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망 I이 중증 치매 상태로 의사무능력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사 피고들이 적법하게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 K이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망 K의 상속인들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민법에 따라 계산한 각 지분에 따른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망 K을 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917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 A 또한 피고들을 채무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8카단4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3. 2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 E 또한 피고들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단133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8. 9. 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관계 및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쟁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늦어도 원고 E가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2018. 9. 무렵에는 민법 제1117조에 따른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역수상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원고들 주장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선주

